1 제도 개요

전문연구요원 제도란?

■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(연구기관)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.

■ 전문연구요원 : 이공계 석·박사 등 연구인력으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 36개월 복무

관련법령

■ 병역법 [법률 제15054호(시행 '18. 5. 29.)]
■ 병역법시행령 [대통령령 제28905호(시행 '18. 5. 29.)]
■ 병역법시행규칙 [국방부령 제963호(시행 '18. 6. 11.)]
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[병무청 훈령 제1524호(시행 '18. 5. 16.)]

관련 용어의 정의

■ "전문연구요원" 은 학문과 과학기술 연구를 위하여 「병역법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

＊ 이하 「병역법」은 법, 「병역법 시행령」은 영, 「병역법 시행규칙」은 규칙이라 함

■ "병역지정업체" 라 함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·기간산업체·방위산업체 등을 말함

용어해설

▼ 병역지정업체는 법인 단위로 선정하지 않고 연구소 단위로 선정하고 있음

▼ 한 개 법인에 여러 개의 연구소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

- “고용주” 라 함은 병역의무자의 고용으로 「근로기준법」의 적용을 받는 공·사 기업체나 공·사 단체의 장
- “연구전담요원” 은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
- “연구시설” 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기자재를 말함
- “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” 이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, “연구기자재” 란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를 말함
- “연구개발활동” 이란 과학기술분야 지식 축적 및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, 시제품의 설계·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
- “해당분야” 란 병역지정업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분야가 대학(원)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말함
- “자연계 학사” 란 대학에서 자연계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학사학위
- “당연전직” 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
- “승인전직” 은 영 제85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
- “교육훈련” 이란 교육훈련(연수)기관에서 연구업무 또는 제조·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훈련(정신교육 포함)을 말함
- “지방병무청” 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하며, “관할 지방병무청장” 은 병역지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(지)청장을 말함
- “병가” 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·휴직 및 결근을 말함
- “무단결근” 이란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함
- “국내 파견근무” 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,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
- “국내 출장근무” 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소속으로 해당업체에서 개발·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·시험가동 및 기술지도 등을 위해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 하는 것
- “중소기업” 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
- “중견기업” 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
- “대기업” 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